

(비공식번역본)

투자위원회 고시

제 2/2560 호

가치기반 혜택(Merit-based Incentives)에 관한  
추가적 권리와 혜택 변경

-----

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 및 지출을 활성화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불기 2520 년(1977 년) 투자촉진법 제 16 조 두번째 단락, 제 18 조, 제 31 조 및 제 31/1 조에 의거하여 투자위원회는 가치기반에 관한 추가의 권리와 혜택 내용을 변경한다. 불기 2557 년(2014 년) 12 월 3 일 투자위원회 고시 제 2/2557 호에 따라 추가적인 법인소득세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.

(1) 연구개발, 기술혁신: 인하우스 연구개발 또는 태국 내 외주업체에 의한 연구개발 또는 해외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투자액 또는 비용에 대해 현행 200%에서 300%로 계산 비율을 변경한다.

(2) 태국에서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는 기술료(royalty fee)에 대한 투자금 또는 발생 비용을 현행 100%에서 200%로 계산 비율을 변경한다.

(3) 고급기술교육: 투자금 또는 발생 비용에 대해 현행 100%에서 200%로 계산 비율을 변경한다.

(4) 등록자본금의 51% 이상의 태국인 지분으로 구성된 태국 원자재 또는 부품사(현지 공급업체)를 개발하기 위한 고급기술교육과 기술지원에 대한 투자액 또는 비용은 현행 100%에서 200%로 계산 비율을 변경한다.

(5) 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회사가 직접(인하우스) 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제품 및 포장 설계를 할 경우, 투자액 또는 비용에 대해 현행 100%에서 200%로 계산 비율을 변경한다.

이 고시는 불기 2560 년(2017 년) 2 월 8 일부터 발효한다.

고시일 2017 년 3 월 14 일

(General Prayut Chan-o-cha)

투자위원회 의장